<붙임> 지도전문의 교육관련 참고사항

□ 지도전문의의 정의

- **지도전문의**는 「의료법」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전공의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(4시간)을 받은 전문의를 수 련병원(기관)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, 레지던트 수련 전문과목별 지정기준 등에 적용한다.
 - 수련병원(기관)장은 해당 병원의 해당 전문과목에 소속된 전속전문 의 중에서 지도전문의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□ 정원책정지도전문의의 정의

- 정원책정지도전문의는 전공의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전문의 중 동법 제12조의3의 지도전문의 교육(기초·정기)을 모두 이수한 지도전문의를 말하며, 레지던트 정원책정 기준에 적용한다.
- 정원책정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(국내 연구년)는 1년을 인정한다.

□ 지도전문의의 정기교육

- 지도전문의는 전공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정기교육(8시간) 을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아야 한 다. 다만,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(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 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 받은 경우 포함) 받은 사람의 경우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 로 받아야 한다.
- 정기교육은 3년마다(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말함) 8시 간 이상 받아야 한다. 단,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 받은자의 정기교 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.
-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교육주기는

다음과 같이 한다.

- 2012년 9월 30일 이전의 지도전문의(수련병원에서의 종사 경험이 1년 이상인 자)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(온라인교육 포함) 주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2012년 10월 1일 이후의 지도전문의(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)는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최초 교육을 이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.

※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(정기교육) 조건부 인 정(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-5633(2020.5.20.))

적용대상	정기교육 이수방법 및 조치
정기교육을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 (대면교육 대상)	- '21.9.30이전까지 공통교육(온라인,4 시간)을 받은 경우,정기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우선 인정(정원책정지도전 문의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 여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책정 등에 불이 익 없음) - 추후 학회교육(4시간)은 '21.12.31 까지 이수 완료 조건